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74869
등록일자	2025. 12. 29.
결재일자	2025. 12. 29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복지기획팀장	복지정책과장
	대결 2025. 12. 29.	전결
한현주	황경숙	

2026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계획

개 요

■ 지원근거

-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
-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
■ 지원개요

- 지원시기: 연간 수시
- 지원대상: 1,400명정도(참전유공자)
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
- 지원금액: 1인 300천원(2023.1.1.이후 사망일인 사망자)
- 지원방법: 36,000천원(구비 100%)

2026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계획

나라를 위해 희생·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.

I 추진배경

-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,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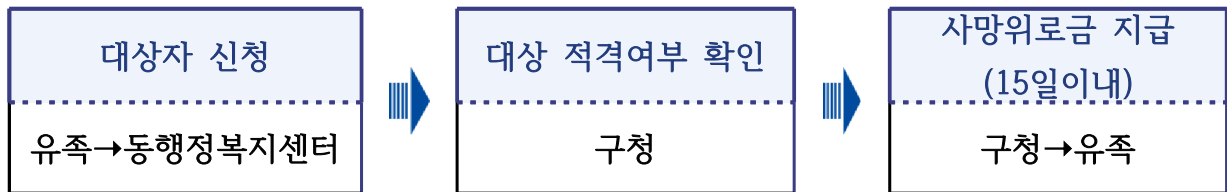
II 지원근거

-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
-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
III 지원계획

- 지원기간: 연중 수시
 - ※ 신청기한 ⇨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지원대상: 1,460명 정도(2025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)

- 지원금액: 1인당 300천원(2023.1.1.이후 사망일인 사망자)
- 예 산 액: 36,000천원 (구비100%)
- 지원기준: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보훈청 등록 참전유공자
- 지원절차



-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 (유족 및 가족의 범위)
 - 1순위 배우자 / 2순위 자녀 / 3순위 부모
 - ※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준용
- 신청 구비서류
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
 - 신청인 신분증
 - 신청인의 통장 사본

IV 행정사항

- 사업 안내 및 홍보(보훈단체 공문 발송, 단체 회의시 등): 2026. 1월
- 동 행정복지센터: 참전유공자 사망 → 유족에게 신청안내
- 시행일자: 2026.1.1.부터
- [서식1]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
- [서식2] 사망위로금 지급 대장

별지 제1호 서식

참전등록번호							
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						처리기간	
						15일	
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	
	주소	(전화번호 :)					
	참전유공자와의 관계		금융기관명 (예금계좌)				
참전유공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	
	주소						
	사망일자						
「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
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							
※ 구비서류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4.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5. 신청인의 신분증						수수료	
						없음	

별지 제2호 서식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장

구분	사망자 성명	생년월일	사망일	주 소	신청인				비고
					신청일	성명	관계	주민번호	